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3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2월 6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민·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완성차업계 내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·이전등록 및 계약금액 2,0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 체결 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의무 면제대상 “1,000만원 미만” → “2,000만원 미만”으로 확대(안 제3조 제1항 제2호)

나.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2,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의무 면제(안 제3조 제1항 제3호)

다. 비사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 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무 한시적 면제(안 제3조 제1항 제4호)

3. 참고사항

가) 관계법령 : 「도시철도법」

나)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)

다) 기 타

(1) 입법예고(2022. 12. 8. ~ 12. 13.) 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3) 비용추계서 : 별첨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1,000만원”을 “2,0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·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2,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.
4.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(배기량 1,000cc 이상 1,600cc 미만인 것)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② (생략)

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
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매입
의무를 면제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소형차 신규·이전등록 및 2,000만원 미만 소액계약 공채 매입의무 면제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공채 매입액의 감소는 세입 감소임과 동시에 차입(지방채) 감소 의미
- 매입액 감소분만큼 지방채 차입 예상 → 이자비용(지방채 이율-공채이율) 증가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세입 감소)

- 신규등록 면제 : 연간 약 818억원 세입(차입) 감소 예상(~'25년)
※ 市 소형차 연간 등록대수 37,000여대('21년 기준) 및 대당 차량가액 2,500만원 전제
- 이전등록 면제 : 이전등록 차량가액이 일정치 않아 추계 제외
- 소액계약 면제 : 연간 약 1억원 세입(차입) 감소 예상

(세출 증가)

- 공채 매입액 감소분만큼 일반 지방채로 채원조달 시 이자비용(지방채-공채 이율 간 차이에 기인)이 예상되나, 시중금리 상황 및 지방채 조건(만기 등)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어 추계 제외

4. 채원조달 방안

- 도시철도공채 역시 지방채의 한 종류인 바, 타 일반 지방채로 조달 예상

5. 덧붙이는 의견 : 해당사항 없음

6. 작성자 :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박태욱(☎02-2133-4342)